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5일 14시 20분

지방세 상담 챗봇

인터넷지방세

지방세 질문과 답변

마을세무사

납세자보호관

2013년 9월 재산세 납부 안내 (토지분, 주택2기분)

2013.09.13 조회수 120 등록자 이준옥

- 9월은 정기분 재산세 (토지분, 주택 2기분) 납부의 달입니다 -

☒ 재산세의 종류와 부과시기 [7월,9월]

※납세자 :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, 토지 소유자

1. 재산세(주택): 주택본재산세. 주택용도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산하여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. 9월에 토지분재산세 부과안함.

7월에 산출한 재산세(본세)가

- 10만원 이하인 경우: 7월에 부과 1회로 종료. 과세대상에 [연납]으로 표기됨.

- 10만원 초과한 경우: 1/2씩 [1기분] 7월, [2기분] 9월에 부과

(예. 16만원인 경우, 7월에 8만원, 9월에 8만원 부과)

즉, 7월에 과세대상에 [1기분]이면, 같은 세액이 [2기분]으로 9월에 부과됨.

2. 재산세(건축물): 건축물본재산세. 주택이 아닌 사무실이나 상가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7월에 부과. 그 부속토지는 9월에 토지분재산세로 부과.

3. 재산세(토지): 토지분재산세. 토지만 있는 경우와 건축물(상가)의 부속토지에 9월에 부과

☒

납부기간 : 2013. 9. 16. ~ 9. 30.

납부장소 : 전국 모든 은행(농협, 수협), 우체국 등

납부방법 : 직접납부, 인터넷납부, 신용카드납부, 가상계좌납부

○ 인터넷 납부

●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(www.wetax.go.kr) 또는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(www.giro.or.kr)에 접속

● 공인인증서 로그인 및 회원 가입한 다음 납부

○ 신용카드 납부

● 카드종류 : 국내의 모든 신용카드

● 납부은행 : 전국 모든 은행(농협, 수협), 우체국 등

● 납부방법 : 은행 입출금기(CD/ATM) 및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로 납부

○ 가상계좌 납부

● 방 법 : 고지서에 표기된 계좌번호로 입금 납부

※문의사항 : 목포시 세정과 ☎ 270-3429, 3430, 3293, 3294, 8168

글쓰기

목록

이전글
주택취득세문의

다음글
지방세 가상계좌 이체시 수수료가 추가되는 문제...

MokPo - Si
Web Contents

